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정 성 수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3년 9월 4일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 2003년 9월 8일

☐ 상정일자 : 2003년 9월 19일

<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3. 개정사유

☐ 2002.11.29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요금 차등적용 등 공공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 그 동안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년5%~8%"를 "년4%~6%"로 인하(안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계획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리(안제21조의2, 안제22조)

☐ 대부료의 특례조항 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제1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상 용어와 상이한 우리구 조례상 용어정리(안 제24조의2)
· 세입·세출예산의 현금 → 세입·세출의 현금

☐ 연체이자율 연 15%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연 12%~15%로 차등 적용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60일로 설정(안 제27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탁의 종류의 근거조문 변경(안 제30조의3)

☐ 분할납부·대부료에 대한 특례 및 연체요율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일(2002.11.29) 이후부터 적용례 규정(부칙 제3호)

5. 검토의견

☐ 안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으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와 공유재산대부료 등의 연체이자율 인하 및 차등적용 등은 최근 시중금리가 하향추세에다 금융기관 연체율도 차등

적용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맞추어 종전 획일화하여 적용하던 연체요율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임

- 기타 안 제21조의2 및 안 제22조, 안 제22조의2, 안 제24조의2, 안 제30조의3 등의 개정은 근거가 되는 관련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거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6.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 제6항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①잠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9.29, 2002.11.29>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4.4.30, 2001.9.15, 2002.11.29>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05.12, 개정 2003.04.15)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 이상 ~ 20% 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 이상 ~ 50% 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 이상 ~ 100% 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 이상 ~ 200% 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 500% 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